

구미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9. 5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개정이유

- 결산검사위원회 일비 지급과 관련한 불부합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 또한 지방자치법의(시행령 제33조)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 여비 지급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함

2. 주요내용

- 결산검사위원회 일비 지급과 관련한 불부합 조문인 “다만,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” 는 단서를 삭제함(안 제10조 제1항)
- 결산검사위원회 여비 지급기준을 “공무원 국내여비규정 『별표2』 여비지급기준표상의 부시장 상당액” 에서 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『별표5』의 기준액을 준용 함” 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-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-1948(2008.12.17)호 :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수당 지급 관련 행정안전부 유권해석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(의정활동비,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

구미시조례 제 호

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별표 여비란의 액수란 “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지급구분표상의
부시장 상당액”을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 별표5의 기준액을 준용 함”
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	개정안	
제10조(일비의 지급)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. <u>다만, 국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국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</u>		제10조(일비의 지급) ①----- ----- ----- ----. (단서삭제)	
②(생략)		②(현행과 같음)	
[별표]		[별표]	
구분	액수	구분	액수
일비	100,000원	일비	현행과 같음
여비	국내여비규정 “별표2” 여비지급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액	여비	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 “별표5”의 기준액을 준용 함